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2388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05월 31일

2. 제안이유

- 가. 돈화문국악당은 정재(궁중무용), 정악(궁중음악) 중심의 국악 전문공연장으로
- 나. 문화예술경영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 (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돈화문국악당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룡동 12-2 외 6(부지면적 845.6m²)

○ 시설규모 : 지하 3층 / 지상 1층(연면적 1,778.98m²)

○ 공간구성 : 공연장, 야외마당, 사무실, 연습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1.1. ~ 2024.12.31.

○ 위탁업무

-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 소요예산 : 연간 약 2,200백만원

○ 수탁기관 : ㈜인사이트모션 (전기위탁기간: '19.2.15~'21.12.3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1항, 3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사무의위탁) 1항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3호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2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2016.2.15.) 6년이 경과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1항 및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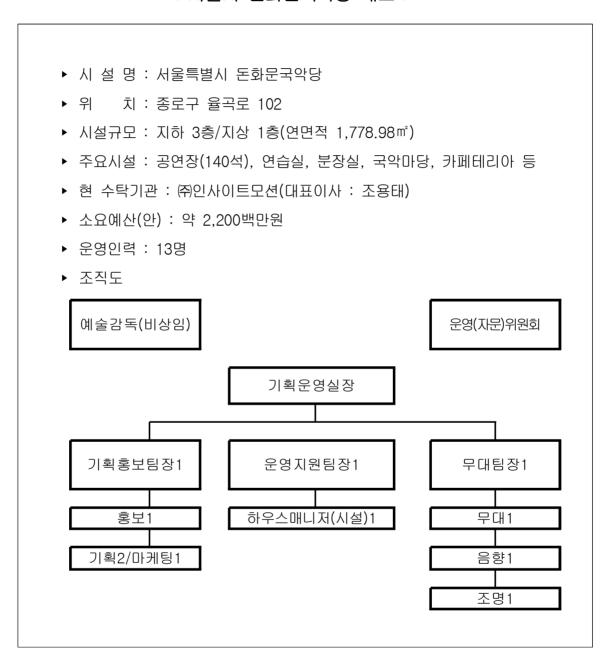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시는 2016년부터 국악거점의 핵심기관이자 정재(궁중무용)와 정악 (궁중음악) 중심의 국악 전문공연장인 돈화문국악당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돈화문국악당 개요 >



○ 2019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현 수탁자 ㈜인사이트모션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일(173일)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계 공연장 평균가동률(77%)에 비해 우수한 133.8%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28일 국내에서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시범 운영하였고, 3월 기획공연을 국악방송TV와 협력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이후기획공연 전반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후 스트리밍, 영상콘텐츠 제작 후 스트리밍 등 다양한 시도1)로 비대면 공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국악당의 민간위탁금은 18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감액되었으나 유사한 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돈화문국악당 민간위탁금 내역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나	2019년		2020년		2021년
	十 正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민간위탁금	1,728	1,668	1,982	1,944	1,876
	인건비	484	415	522	486	534
	운영비	487	491	83	83	98
	시설관리비	-	_	452	451	450
	사업비	483	489	609	608	480
	대행료	117	117	136	136	143
	부가가치세	157	157	180	180	170

¹⁾ 박선미 외, '비대면 공연으로의 전환과 마케팅 시사점 연구 -서울 돈화문 국악당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2호 통권 78집, 2021. p.154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9. (생략)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돈화문국악당의 민간위탁(재위탁) 계획은 2021년 4월에 수립되었고, 5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을 통보 받은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계약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적격자 심의위원회까지 완료).

<2021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돈화문국악당 운영	재계약	3년	적정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서 권고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전년도 대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증대하고 예산운 용계획과 달리 연도말인 4분기의 집행 비중이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 **사회적가치 기여**에 관해서는 사회적 기업, 친환경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를 통한 실적과 지역 자원봉사자 활용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받았고. 지역의 직장이나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시설 이

용 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연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기획과 노력을 권고 받았으며.

-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이해관계자와 단순히 협력체로 장소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악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여 공연장 인지도 상승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고.
- **시민만족도** 측면에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와 공연에 참 여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권고받았음.

라.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국악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여 공연장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주 관람층이 이 미 국악과 관련 있는 자들로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을 위 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연장 인지 도 상승과 새로운 관객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더욱 노력할 필요 성이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